

# 청 와 대 민 원

제목 : 진실을 밝혀주세요.

민원인 : 임그루

우편번호 36322

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 다세대주택a동 103호

휴대폰 010-2878-2177

## 내 용

국민권익위원회에 2016년 8월 9일 접수(1BA-1608-060985)되어  
대법원 법원행정처로 이송된 민원(2BA-1608-148112)답변을10월13  
일 받았습니다. 이해되지 않아 다시 민원 합니다.

## 민 원 요 약

**1.법원행정처** 답변 2를 보면 “재판은 그 사건을 담당 한 법관만이 헌법  
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  
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” 라고 되어있습니다.

예로 법률로서도 양심으로서도 의사진단서 회사사규 등은 보통 가짜  
가 아니면 인정합니다. 아마 법원에서도 이런 것들로 증거채출을 요구  
할 것이고, 증거채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은 그  
렇지 않았습니다. 여러 번 법도 양심도 없이 재판했습니다. 그래서 로  
스쿨 출신 판사님들에게 재판받고 싶습니다.

2.법원의 이송결정으로 노동조합법에서 보장된 조합원의 알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서 목살당해도 현재의 법률로서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법이 정비 혹은 개정되어서라도 노동조합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.

### 맺 음 말

대법원장님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님이 임명합니다. 즉 대법원장님은 국민이 임명합니다. 저는 대통령님께 민원 했습니다. 대통령님의 답변은 아니 시라도 대통령님께서서 임명하신 대법원장님의 답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“재판사무국장”님 답변입니다.

대법원장님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.

첨부:참고 ①.법원행정처“재판사무국장”답변 2장

②.청와대민원(2016년 8월 9일 접수(1BA-1608-060985))

- 첨부물 생략으로 3장

2016년 10월 일 임그루

박근혜대통령 귀하